

# 「전국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M a d u C o o p

「광역 시·도 조례」



---

---

---

---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3-06 조례 제5774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협회, 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 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4.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장기 구매촉진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를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홍보, 교육, 포상,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 제7조(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 제9조(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10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판로개척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판로개척,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하고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3-06 조례 제5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6-06-10 조례 제 4141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사회적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 라. 그 밖에 가목, 나목 및 다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
3. "공공기관"이란 도 소속 및 산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나.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다.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계획
2.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유통·판매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연도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추진체계
  3. 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서 작성)** ① 도지사는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작성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우선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5.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실적

**제9조(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4.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차례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을 따른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해당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도 소재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조례 제4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7-11-01 조례 제 4971호

**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다. 마을주인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마을 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 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사업장 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 바.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사무처
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작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4.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6-08-01 조례 제 4096호  
(일부개정) 2017-12-28 조례 제 4606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17. 12. 28.)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7. 12. 28.)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2. 전라남도의회사무처 (개정 2017. 12. 28.)
3.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개정 2017. 12. 28.)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 누리집 등에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품목별 구매 목표액 및 목표율 (개정 2017. 12. 28.)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정 2017. 12. 28.)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개정 2017. 12. 28.)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7. 12.



28.)

③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구매율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에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전년도 하반기 구매실적을 익년도 2월말, 당해 연도 상반기 구매실적은 당해 연도 7월말까지 도 누리집과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제8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평가) (신설 2017. 12. 28.)** 도지사는 도의 부서장 평가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9조 (삭제 2017. 12. 28.)** ① (삭제 2017. 12. 28.)

② (삭제 2017. 12. 28.)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3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 시·군·구」

#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7.05.11 조례 제1252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 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2. 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고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구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2017.05.11.,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3.06.13 조례 제1004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5.11.04 조례 제1089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단, 농협 중 경제·금융지주 회사에 따른 사업조직 및 수협 중 출자회사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수행조직은 제외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서대문자연사박물관), 동
2. 구의회 사무국
3.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및 구매 목표
2. 구민 교육 및 홍보, 전문 인력 양성 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의 공표)** ① 구청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① 공공기관 등은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60일 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월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9조제3항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계약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기업 여부,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 등이 판단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2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③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④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2.07.19 조례 제 915호  
(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1022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구의회 사무국
3.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개정 2014.12.26)
4. 성북문화재단(신설 2014.12.26)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3조(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4.12.26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4.10.10 조례 제1144호

**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와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②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주민센터
2. 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

수 있다.

**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8.01.25 조례 제1242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시의회 사무국
3.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탁기관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우선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5.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실적

**제10조(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5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2018. 1. 24.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5.12.15 조례 제1459호  
(일부개정) 2018.03.15 조례 제1742호 다른조례 개정

**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서 정한 기업 및 마을기업, 자활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 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03.15.)
2. 시의회 사무국
3. 아산시시설관리공단
4. 아산문화재단
5. 아산시 민간 위탁 기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탁기관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 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 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를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도 고 인정하는 사항

4.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조례 제1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전단 중 “읍.면.동사무소” 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5.04.16 조례 제1395호

(일부개정) 2016.04.28 조례 제1482호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4. 18)
  - 가.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 다. 마을기업. 다만,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라.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시
2. 시 소속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에 따른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계획
2.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3. 관내기업의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4. 생산·유통 또는 판매사업자 지원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연도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연도 말까지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사회적경제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목표율
2. 구매촉진 추진체계
3.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구매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촉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조(구매실적서의 작성)** ①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 3. 생산·유통 또는 판매사업자 지원 실적
- 4. 구매촉진 교육·홍보 실적
- 5. 구매촉진 제도·시책 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물품 등의 제조·구매계약
- 2. 공사, 용역 등의 계약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실적
-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3. 공동체복원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필요하여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 4.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5.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가 우선구매 하도록 정한 재화 및 용역이 있는 경우
- 6.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

한 차례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2조(재정 등 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용자하거나 시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 소재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의 장이나 대표와 그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그 구매촉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그 업무를 대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관평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단체 또는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 4. 18 조례 제1482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을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기업”으로 한다.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7.02.28 조례 제2441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 협동조합
  -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2.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3. 법령이나 「서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제4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계획
2.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서 작성)**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및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모범 사례 등

5.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구매실적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우선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9조(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높은 가격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는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5조(기관 평가)**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제2441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6.07.01 조례 제1549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업 및 마을기업, 자활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 협동조합
  -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2. 천안시의회 사무국
3. 천안시가 법률이나 조례로 출자·출연한 기관
4.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천안시로부터 다른 법률에 의해 위탁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행정 구역에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 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촉진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촉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 지도사업을 개발 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3.04.25 조례 제2199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 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그 밖에 가목과 나목,다목,라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완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마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 의회사무과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군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를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 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 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군이 우선구매하도록 정한 재화 및 용역이 있는 경우
  6.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3조(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군수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 2016.05.19 조례 제1158호

**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 다.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2. 구의회 사무국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을 제조 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8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 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158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6.11.01 조례 제1279호  
(일부개정) 2018.02.09 조례 제1347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자활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다.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9.>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2. 구의회 사무국
3.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 사례 등
-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8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촉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 업무를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3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관 평가)**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7.07.14 조례 제2365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인제군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
3. 법령이나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4. 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판매지원 계획
4. 그 밖에 인제군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공공기관의 관련 자료가 구매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매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② 군수는 구매 실적 집계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제품의 판로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 판매 활성화 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제2365호 2017.7.14.>**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7.11.14 조례 제1917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르는 사회적기업과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중앙부처가 지정한 마을기업
  - 라. 그 밖에 가목, 나목, 다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5조(협의회 설치)** ①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계획

**제7조(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계획(이하 "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 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등
3. 계약 특수 조건 규정, 기관 업무 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 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체·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조(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 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2. 구매 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적
5.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 실적과 수범 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 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체·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10조(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의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제11조(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을 대

매년 1회 이상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조(사회적경제 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등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 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 제품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③ 사회적경제 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④ 그 밖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고양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2017.11.1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 2013.01.07 조례 제1897호  
(일부개정) 2016.09.26 조례 제2193호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2230호  
(일부개정) 2017.06.20 조례 제2264호

**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 다.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
    - 라.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6, 2016. 12. 20, 2017. 6. 20.>

1.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2. 시 의회사무국
3. 광명도시공사
4.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시가 우선구매하도록 정한 재화 및 용역이 있는 경우
  6.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를 “동” 으로 한다.

⑩ 생략

### **<2016. 12. 20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4호,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을 “광명도시공사” 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광역 교육청」



---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2016. 4.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05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적 가치 인식 증대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의 예비사회적기업
  -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 활동,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을 포괄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 촉진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계획(이하 “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4. 구매 촉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교육재정과]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관할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구매 촉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
4. 기관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